

## 시간제 취업 허용 내용

### 1) 심사일반 기준

-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
-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  
※ 단, 개인과의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제한
-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(시행규칙 제27조의2 ② 참조)에 해당하는 지 여부

#### **【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1조의 영업장 예시】**

1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
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
3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4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, 목욕장업(沐浴場業), 이용업(理容業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5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6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
7.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-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, 평균학점(이수학점 기준),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
## 2) 대상별 세부 심사기준

### ① (허용대상) 각 자격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가

#### ○ 유학생(D-2)

- (최소 성적)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이상인 경우
  - ※ 단,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
- (한국어 능력)
  - 전문학사 및 학사 1~2년 : 토픽 3급(KIIP 3단계 이수) 이상 자격증 소지자
  - 학사 3~4년 및 석·박사 : 토픽 4급(KIIP 4단계 이수) 이상 자격증을 소지자
- (영어트랙과정 특례)
  -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
  - 단,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

#### ○ 어학연수생(D-4)

- (최소 출석)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인 경우
- (한국어 능력) 토픽 2급(KIIP 3단계 이수) 이상 자격증 소지자

### ② 처리요령

- 어학연수생(D-4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, 장소는 1곳으로 한정
- 유학생(D-2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
- 신청사항(장소, 근무시간 등)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

### ③ 제조업, 건설업체 제한에 따른 서류심사 기준(체류관리과5475, '17.9.12.)

○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,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

○ 다만,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

i)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대학이 제출하는 '시간제취업확인서' 상에 기재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

ii) 단,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익 4급(KIIP 4단계 이수)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

### 3) 허용시간

○ (어학연수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)  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

○ (학부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 유학생,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+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,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)  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은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)

○ (석·박사과정) 주당 30시간 이내(인증대학 유학생,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,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은 주당 35시간 이내)  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)

○ 단, 한국어,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 내에서만 허용

<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 >

대학 유형	학년	한국어 능력 수준 (토픽, KIIP)		시작 시기	허용시간		인증대, 성적우수자 혜택 (주중)
					주중	주말, 방학기간	
어학 연수 과정	무관	'18.10.1 이전		6개월후	20시간		25시간
		2급	×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	25시간
전문 학사 과정	무관	'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	25시간
		3급	×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<b>20시간</b>	<b>무제한</b>	25시간
학사 과정	1~2 학년	'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	3급	×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3~4 학년	'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	4급	×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무제한	25시간
석/박사 과정	무관	'18.10.1 이전		제한없음	30시간	무제한	35시간
		4급	×	상동	15시간		15시간
			○	상동	30시간	무제한	35시간

4)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(예시)

○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

○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
※ 단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
5) 허가내용

○ 자격약호 : D-2-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

○ 허가기간 :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, 장소는 최대 2곳으로 한정

※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(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)

6) 장소변경

○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## 7) 위반자 처리기준

### ○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

- 불법취업(불법고용)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(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, 체류허가 등 결정)
-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,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
- ※ 단, 성적 및 출석을, 원격지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(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)
-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

※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(입국규제를 유예하고, 학업 의지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)

### ○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

- 1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
- 2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
- 3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

## 신청서류

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, 수수료(면제)
- 시간제취업 확인서
-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(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)
-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: 토픽\*(또는 KIIP) 자격증 (해당자에 한함)
  - 영어 수업 과정(트랙)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
- \*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표도 인정 가능하며,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토픽 성적표 제출 사실과 성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
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- 단, 제조업, 건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'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'(참고 4-2 서식)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 및 근무내용,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)
  -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
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(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)
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  -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복합직종인 경우 고용주가 작성(서식 별첨)